

공정거래위원회 운전서기보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 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4년 12월 16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인원 (1개 직위, 총 1명)

임용예정직급	채용기간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운전서기보	정년 적용	1명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과천)

※ 근무예정부서와 별개로 실근무지는 운전업무 특성 및 내부사정에 따라 **서울과 세종을 순환하여 근무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 응시 요망★**

2 임용예정직무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운전	운전서기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관용차량 운행 및 기관장 운전 수행관용차량 점검 및 유지관리 등기타 행정업무 지원 등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등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18세 이상(2007.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25.1.23.) 기준]

채용분야	응시자격 요건(필수)	
운전	자격증	○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자 *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하며, 국내 자격증만 해당(면허정지 또는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 불가)

※ 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은 "붙임2" 참조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응시자격요건(자격증)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25.1.23.예정) 기준으로 판단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하며,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다. 우대요건 [원서접수 마감일(2024.12.27.) 기준]

우대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② 교통법규 준수 이력③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④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	--

※ 구체적인 우대요건은 하단의 고려사항 참고

[우대요건 등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우대요건 관련

①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 후 운전직 근무경력 (연차별 차등우대)

- ▶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소지한 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및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사업자 등록업체에 소속되어 승객을 대상으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별표1]에 의한 승용차량 또는 승합차량을 운행한 경력을 의미

- 영업(판매)직 및 단순 현장근무 기술직으로 근무한 경력, 응시자 본인이 개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 화물차·특수차·이륜차 운전 경력은 제외

- ▶ 군 경력의 경우, 운전 관련 주특기자로 인원수송을 위해 승용차 또는 승합차를 운전한 경력이 군 운전경력확인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로 증빙된 경우에 한해 인정(보병, 포병 등 다른 병과 경력은 근무경력으로 **불인정**)

- ▶ **경력증명서 제출된 건에 한해서만 인정**하며, 경력증명서에는 **(1)근무기간(연·월·일), (2)근무형태(주근로시간 및 상근여부), (3)담당업무(예: 운전원, 운전직, 운전업무 수행 등), (4)운행차종(승용·승합, 인승)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해당 내용이 누락되는 등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경력증명서에는 발급담당자, 성명, 회사 직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

- 검증을 위해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및 '소득금액

증명서'를 함께 제출(미제출 또는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 동일 기간에 경력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근무기간이 긴 경력)함
-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근무(시간제근무)의 경우 기준(주당 40시간 근무)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전임 근무 :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 [예]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 범위를 결정

②교통법규 준수 이력(건수별 차등)

- ▶ **공고일 이후**(원서접수마감일 전까지)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 기준**(운전면허경력, 법규 위반기간, 교통사고 기간 등 모두 **전체경력으로 발급**)
- ▶ **공고일 이전 발급분 또는 조회기간이 전체가 아닌 경우 불인정** 유의
- ▶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의 경우 건수와 관계없이 0점 처리

③직무분야 관련 자격증(등급별 차등 우대)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 정비·검사 관련 자격증
 - ① 자동차 정비(기능장, 산업기사, 기사, 기능사), 차량기술사(주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② 구자동차 검사(산업기사, 기사, 기능사)
- ▶ 복수의 자격증 소지시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 원서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불인정

④사무관리 분야 자격증(등급 무관, 소지여부에 따른 우대)

- ▶ 관련 자격증 : ①워드프로세서(구 1급), ②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 ▶ 복수의 자격증 소지하더라도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 원서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불인정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직위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초과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평가요소) ① 소통·공감, ② 헌신·열정, ③ 창의·혁신, ④ 윤리·책임
⑤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시험 일정

구분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24.12.16.(월) ~ 12.27.(금)	'24.12.23.(월) ~ 12.27.(금)	'25.1.17.(금)	'25.1.23.(목)	'25.2.12.(수)

- 본 시험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하고,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별도로 개별 통보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나라일터에 게재 예정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 2024. 12. 23.(월) ~ 12. 27.(금) 9:00 ~ 18:00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
 - 응시원서는 아래의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
- 등기우편 접수 주소 : (우)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인사) 채용담당자(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원서 재중 기재) / 문의전화 : 044-200-4183
 -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나. 제출서류

- 아래 표의 필수 제출서류와 해당자에 한해서 제출하는 서류를 구분하여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플러사용금지)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필수서류)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자에 한함)의 경우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할 것

구 분	내 용
I. 공통사항(필수제출서류)	
1.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1부(별지서식 제1호) : 필수서류	○ 응시자별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총괄표 작성
2.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제2호) : 필수서류	○ 응시수수료 - 9급 : 5,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 가까운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함께 제출
3. 이력서 1부(별지서식 제3호) : 필수서류	○ 별지서식 제3호 작성 -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4.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제4호) : 필수서류	○ A4 2매 이내로 작성
5.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제5호) : 필수서류	○ A4 요약서 1매 + A4 3매로 작성(총 4매 이내)
6. 주민등록초본 1부 : 필수서류	○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병적증명서 제출
7. 응시자격요건 자격증(운전면허증) 1부 : 필수서류	○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증
8. 운전경력증명서 1부 : 필수서류	○ 공고일 이후 경찰서에서 발행된 것에 한하며,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을 반드시 전체로 발급 ※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출력하거나, 경찰서에서 발행 ※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증명서인 경우 또는 조회기간이 전체가 아닌 경우에는 불인정됨 에 유의

구 분	내 용
9.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6호) : 필수서류	○ 자필 서명 필수
10.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별지서식 제7호) : 필수서류	○ 자필 서명 필수
II.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함)	
11.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 경력의 경우 군 운전경력확인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로 증빙된 서류에 한해 인정하며, 운전 관련 주특기자가 아니거나 보병, 포병 등 다른 병과 경력은 불인정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재직)증명서 제출 ○ 근무기간(연·월·일)·근무형태(주근로시간 및 상근여부)·담당 업무·운행차종(승용·승합/인승)을 정확히 기재(누락시 불이익 발생) ○ 경력증명 서류 미제출 및 내용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되며, 서류전형시 불이익 있을 수 있음(필요시 별지서식 제8호 활용) ○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12.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 정비·검사 관련 자격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자동차 정비(기능장, 산업기사, 기사, 기능사), 차량기술사 ② 구자동차 검사(산업기사, 기사, 기능사)
13.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 ①워드프로세서(구 1급), ②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14.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별지서식 제9호) : 해당자에 한함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자필 서명 필수)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임용예정직무,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을 정확하게 확인 후 응시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통(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개별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전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제출된 서류에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변조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 정지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

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법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가 되므로 응시원서 작성방법, 시험일정과 안내 사항, 합격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내에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의 반환을 희망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별지 서식 9)를 작성하여 이메일(jw20@korea.kr)로 제출하시면 해당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5. 2. 12. ~ 2. 28.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 2025. 2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기간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른 정년 적용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9 안내 및 참고사항

-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또는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 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문의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044-200-4183)로 문의 바랍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내목 중 아동복지법(제14925호)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2329호)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영구 임용결격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24.5.31.을 기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마1181(2022.11.24.), 2020헌마1605·2022헌마1276(병합) (2023.6.29.))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정부입법으로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 중인바, 이에 따르면 동법 개정 이후 개정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임용될 수 없고, 임용되었다더라도 개정법 시행일에 퇴직하게 됩니다. 정부입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붙임 2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운전	운전서기보	1명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과천)
주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용차량 운행 및 기관장 운전 수행 ○ 관용차량 점검 및 유지관리 등 ○ 기타 행정업무 지원 등 		
필요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문제해결력, 관계구축력, 의사소통 ○ (직렬별 역량) 기술적 전문지식, 문제해결력 		
필요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관련 법규 및 도로체계에 관한 지식 ○ 차량운행 및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기초 지식 ○ 행정업무에 필요한 컴퓨터 활용 기초 지식 		
응시자격 요건	자격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자 *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하며, 국내 자격증만 해당 (면허정지 또는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 불가) 	
우대요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 ② 교통법규 준수 이력 ③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 ④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p>※ 구체적인 우대요건은 공고문 참고</p>		
<p>※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우대요건"은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충족하여야 함</p>			

<별지서식 제1호>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 부분만 작성

성명	생년월일	응시부처	응시직급	응시분야
		공정거래위원회	운전서기보	운전

목 록	제출여부	
① 응시원서 1부 (정부수입인지 5천원 포함) - 필수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② 경력채용 이력서 1부 - 필수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③ 자기소개서 1부 - 필수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 필수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⑤ 주민등록초본 1부(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필수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⑥ 응시자격요건 자격증 1부(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증) - 필수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⑦ 운전경력증명서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조회기간 전체분) - 필수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⑧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필수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⑨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 필수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⑩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⑪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⑫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응시자 본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체크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2024. . .

성명 : (서명)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서식 제2호>

(앞 면)

※ 뒷 면의 응시원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

응시원서 (원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

본인은 공정거래위원회 경력경쟁채용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응시원서(원본)			
응시직급 및 분야		운전서기보 / 운전	
응시자격		자격증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응시번호	※ 채용담당자 기재란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해당(국적명:)
주소	(우)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란 (5,000원)
전자우편			
휴대전화			

응시표			
응시직급 및 분야		운전서기보 / 운전	
응시자격		자격증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응시번호	※ 채용담당자 기재	성명	(한글) (한자)

주의사항

-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접수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시험일 전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에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 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1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뒷 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2. 『응시원서』 는 아래의 《작성요령》 에 따라 작성한다.

◆ 작성요령

『※』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 ① 응시직급 및 분야 : 수정하지 않음
- ② 응시자격 : 공고문과 붙임 파일의 응시자격요건을 참고하여 자격증 유무 중 선택
- ③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④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⑤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해당없음’ 선택
- ⑥ 정부수입인지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를 부착하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②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③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④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별지서식 제3호>

(앞 면)

※ 뒷 면의 이력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

이 력 서

※ 부분만 작성

1. 공통사항

응시 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 분야	운전	응시자격 요건	자격증 소지		성명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2. 응시자격

자격 증	면허내용	면허번호	취득(예정)일자	자격 검정기관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			도로교통공단

3. 우대요건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공란으로 두되, 교통법규 준수이력은 반드시 작성할 것)

경력	근무기관 (부서)	근무 시작일 <small>*최근경력순</small>	근무 종료일	담당업무	운행차종 (승용/승합/인승)	직위 (관리자 여부OX)	근무형태 (주근로시간)
		OO기업(OO과)	23.01.01	23.12.31.	- 기관장 운전수행 - 관용차량 유지·관리	G80 (승용/4인승)	사원(X)
	OO기업(OO과)	22.01.01.	22.12.31.	- 부기관장 운전수행	대형버스 (승합/45인승)	과장(O)	비전임(주 20시간)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와 불일치 또는 불명확할 경우 서류평가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입력

교통법규 준수이력 (반드시 작성)	교통사고			교통법규 위반		
	해당 여부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해당 여부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해당 건수	()건		해당 건수	()건	
(3)직무분야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뒷 면)

이력서 작성요령

『이력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통사항 】

-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② 응시분야 : 수정하지 않음
- ③ 응시자격요건 : 공고문과 붙임 파일의 응시자격요건을 참고하여 자격증 유무 중 선택

【 응시자격 】 : 해당사항에 한하여 작성

자격증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만 기재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증명·자격증 취득예정일·자격 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우대요건 】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경력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운행차종)
 -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경력기간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직기간 및 사유를 별도 기재
-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를 나누어 기재
- 근무형태는 '전임(통상근무자)' 또는 '비전임(단시간근무자)'으로 표시하되, 비전임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 표시,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 예) 통상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인 회사에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한 경우 : 2년 인정

자격증 응시자격요건을 제외한 관련분야 자격증만 작성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하며, 자격증 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 자격증 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은 자격증 취득 증빙 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 우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작성 불필요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응시직급 및 분야	
-----	--	-----------	--

◎ 자기소개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작성요령

- 자기소개서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성격의 장·단점, 직무분야에서의 주요 실적 및 성공사례, 직장구성원으로 바람직한 태도, 대인관계, 특기사항, 앞으로의 각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직무수행 계획서

성 명		응시직급 및 분야	
-----	--	-----------	--

◎ 직무수행계획서

-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 작성요령

-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응시분야 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① 직무에 대한 이해, 소견 및 응시 취지 ② 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③ 구체적인 실천방안 순으로 자유롭게 기술
- 분량은 요약서 A4 1매 + A4용지 3매(총 4매 이내)로 하고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경력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경력, 자격증, 어학능력, 수상실적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공받는 기관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응시생 제출 자료 발급 기관
-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 제공하는 항목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4년 월 일

성명 : (서명)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에 따른 학력·경력·자격증, 수상실적,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등에 해당하는 사항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임용시험령」제53조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3. 복수국적자 경력사항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 데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 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학위, 경력사항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 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인사혁신처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험연도, 시험명, 응시제한기간, 관보게재일, 처분청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주민등록번호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4년 월 일

성명 : (서명)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

경 력(재 직) 증 명 서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경력 사항	근무기관 (부서)	직위 (관리자 여부O,X)	담당업무 (상세기재)	운행차종 (승용/승합/인승)	근무기간		근무형태 (주당 근무시간)
	(주)OO(OO과)	사원(X)	- 기관장 업무수행 - 관용차량 유지 및 관리	G80(승용/4인)	시작일	종료일	전임 (주40)
비고	휴직기간 등 기재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2024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직인							
							발급담당자
							소속
							직위
							성명 (인)
							발급확인자
							소속
							직위
							성명 (인)
1. 담당업무 : 기관장 차량 운행, 관광버스 운행, 행정업무 수행, 출퇴근버스 운행, 의전차량 운행, 행정업무/통근버스운행 등 수행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2. 운행차종 : 실제 운행 차량 및 차종, 인승 기재 / 카니발(승합/11인승) 등							
3. 근무형태 : 전임 또는 비전임 여부 구분(비전임의 경우, 일주일 기준 근무시간 기재)							

<별지서식 제9호>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4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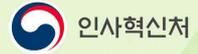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 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참고 1

“공무원 채용시험 봄” 포스터



대한민국 공직, 공무원, 공직문화, 채용시험 정보까지 한번에, 제대로, 확실히 알아볼 수 있는 곳은?

공무원 채용시험 봄

공무원이 되기까지

원래까지 꾸준생

I am 공무원 okay요~

공직으로의 이지도 샐라 굿 초이스!

공직생활의 장점과 매력은?

공직이 추구하는 인재상은?

개인의 성장도 증시하나요?

위라벨 진짜 좋은가요?

시험일정은? 선발인원은? 갖추어야 할 응시요건은?

자유로운 소틀이 가능한가요?

요즘 공직문화 얼마나 달라졌어요?

△△부처는 일하기 좋은 분위기인가요?

직업으로서 공무원 어때요?

합격 아좌좌~!

힘내라 후준생 ☆ ☆

늘 응원해

공직생활의 장점은?

공직으로의 이지도 샐라 굿 초이스!

공직생활의 장점은?

공직이 추구하는 인재상은?

개인의 성장도 증시하나요?

위라벨 진짜 좋은가요?

시험일정은? 선발인원은? 갖추어야 할 응시요건은?

자유로운 소틀이 가능한가요?

요즘 공직문화 얼마나 달라졌어요?

△△부처는 일하기 좋은 분위기인가요?

직업으로서 공무원 어때요?

고리에 고리를 무는 공직문화와 공무원 채용에 대한 궁금증을 지금 바로 **공무원 채용시험 봄** 에서 확인하세요!



2024년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일정							
구분	원서제출	필기시험 (1차)	필기시험 (2차)	서류전형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공개경쟁 채용시험	5급공채(행정)	1. 25. ~ 29.	3. 2.	6. 28. ~ 7. 3.	10. 29. ~ 31.	11. 15.	
	5급공채(기술)			7. 4. ~ 9.			
	외교관후보자 선발			-	11. 1.		
	7급공채	5. 16. ~ 20.	7. 27.	10. 12.		12. 4. ~ 7.	12. 20.
	9급공채	1. 18. ~ 22.	3. 23.		5. 28. ~ 6. 2.	6. 21.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1. 30. ~ 2. 2.		3. 2.	4월 중	5. 9. ~ 10.	5. 24.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7. 22. ~ 26.		8. 31.	10월 말	11. 26. ~ 28.	12. 20.	
민간경력자 5·7급 일괄채용시험	6. 3. ~ 11.		7. 27.	9월 중	11. 6. ~ 13.	12. 30.	
중증장애인 경력채용시험	3. 26. ~ 4. 1.		-	4월 말	6. 20. ~ 21.	8. 14.	

-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에 들어오셔서 2024년도 시험일정 사전 알림 신청 을 선택하시면 원서제출기간 및 시험기일 1주일 전에 SMS 문자로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 채용에정적렬 및 선발인원, 응시자격요건, 시험과목, 시험방식 등의 자세한 시험정보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채용시험 봄은 2040 청춘(청춘) 세대가 대한민국 정부, 공직문화, 공무원 채용을 제대로 들여다 볼 수 있는 창구이자 동기부여가 되는 희망찬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위한 공직소통 채널입니다.



참고 2

임신·출산 및 육아 친화적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인사제도 소개

행복한 출산·양육을 위한 공무원 인사제도 활용 가이드

인사혁신처

1. 임신·출산 환경 지원 1

[휴직]

질병휴직

임신중독증 등 임신 관련 질환 및 불안·난임 치료를 위해 질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병 휴직을 위한 질병휴직 중 임신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임신이 확인된 경우에는 복직이 필요합니다. 다만 임신한 여성공무원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므로, 필요 시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전)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여성공무원이 임신 시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출산을 하게 된 경우,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한가요?
A 출근 의무가 없는 육아휴직 중에는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 임신 시, 인사처에서 복직신청을 하여 복직 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

(임신 전) 난임치료시술휴가

여성공무원은 난임치료 시술 시 총 2일, 체외수정 시술 시 총 3~4일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성공무원의 정차 채용일 당일 하루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 시술별 특별휴가 일수>

대상	시술 종류	휴가일수
여성	난임치료 시술	2일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용하는 체외수정 시술	3일
남성	난자를 채취하여 체외수정 시술	4일
	정자 채취	1일

(임신 후) 임신검진휴가

임신한 여성공무원은 임신검진을 위하여 임신기간 중 총 10일의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검진휴가는 반일 또는 하루 단위로 신청할 수 있고, 최초 신청 시 임신확인서 등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임신·출산 환경 지원 2

[휴가]

(임신 후) 모성보조시간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의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조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성보조시간 사용에 특별한 제한이 있나요?
A 모성보조시간 사용 시 하루 최소근로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출근을 전제로 하는 또 다른 특별휴가(육아시간)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산 전) 출산휴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의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태아의 경우 120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출산 후 휴가기간이 45일(태아 임신 시 60일) 이상이어야 하며, 휴가기간 배치는 의료기관 진단서상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산 후)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산 시,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범위에서 18일에 한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산 시,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사관리)

임신 공무원 필수보조기간 내 정보 허용

임신 중인 공무원의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 시, 필수보조기간 내 정보가 허용됩니다.

임신 공무원 장거리·장기간 출장 제한

기간정은 임신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 공무원의 신청 시, 장거리·장기간 출장이 가능합니다.

임신·출산 공무원 아간 및 휴일 근무명령 금지

기간정은 임신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치지 않은 공무원에게 야간(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시간과 휴일·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의 신청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아간 및 휴일 근무명령이 가능합니다.

2. 임신·출산 물적 지원

[맞춤형 복지]

난임 시술비 지원

난임 시술이 필요한 경우, 맞춤형 복지금 총 500점(50만원)을 지급합니다.
모자보건법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한해 1회 지원됩니다.

태아·산모 진료비 지원

임신 산모 시 검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금 총 200점(20만원)을 지급합니다.

자녀 출산 축하금 지급

둘째 자녀 출산 시에는 2,000점(200만원),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시에는 3,000점(300만원)의 맞춤형 복지점수를 지급합니다.
다태아 출산 시에는 출산 자녀 수만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지원 사업]

공무원 연금대출

질병휴직 또는 육아휴직 중이거나, 신혼부부 공무원 등은 사회정책적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대출에는 일반대출, 주택차용대출, 사회정책적대우 3종이 있으며, 사회정책적대우는 다른 대출 대비 1%p 낮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사회정책적대우를 받기 위한 신청부서 기원은 어떻게 하나요?

A 대출 신청 시, 결혼 전 6개월 이내 또는 결혼 후 2년 이내에 해당 시, 군, 구청 신청 시는 예산상 제약이 없으나, 결혼 후 신청 시에는 혼전보증금으로 출생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무원 임대주택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신혼부부에게는 가점이 부여되며, 입주 중에 임신·출산할 경우 임대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임대주택 지원사업

임신·출산 공무원에게 1차·2차 5만 원 상당의 출산·육아용품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연금복지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며, 전용 온라인몰에서 신청하는 용품을 선택·구매 가능합니다.

3. 육아 환경 지원

[휴직]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자녀 1명당 최대 3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가요?
A 먼저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만 8세 미만(연령이 되기 하루전까지) 또는 국·외교와 함께 1년 이상(국외 근무 시 2년 이상) 해외에 거주하고, 연평균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12개월 중 4개월 이상 사용 가능하며, 기간 초과 후에는 공휴일·신혼·육아휴직 사용 제한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됩니다.

가족돌봄휴직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직기간은 1년 이내이며, 재직기간 중 총 3개월 초과할 수 없습니다.

[휴가]

육아시간

만 5세 이하 자녀 돌봄을 위해 2개월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시간 24개월 신청방식은 ①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월당 1회 차감(연초 사용한 개월부터 다음 월 기준)의 잔액(휴가)을 1개월로 분하고, ②연속하지 않아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20일을 한하여 1개월로 지급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어린이집 휴원, 미성년 자녀 병원 진료 등으로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사관리]

육아 공무원 필수보조기간 내 정보 허용

만 12개월 미만 자녀의 육아를 위해 필요 시, 필수보조기간 내 정보가 허용됩니다.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

질병휴직 등 육아를 위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일정 기간 전환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전환 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전환 근무 지정 기간이 만료되면 전일제 공무원으로 복직됩니다.

4. 육아 물적 지원

[각종 수당]

가족수당

자녀 양육 시, 첫째는 3만원, 둘째는 2만원, 셋째 이후 자녀는 1만원의 가족수당이 매월 지급됩니다.

일회적으로 자녀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지급됩니다.
다만, 만 19세 이상 성년 자녀라도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수당

30일 이상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평균급의 80%(상향액 150만원, 하향액 7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 1년입니다.

재미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재미근무자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재미공무원에게는 자녀 학비보조수당이 지급됩니다.

[맞춤형 복지]

가족접수 부여

자녀 양육 시, 첫째 50점(5만원), 둘째 100점(10만원), 셋째 이후 자녀 200점(20만원)의 맞춤형 복지점수가 매년 부여됩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지원 사업]

공무원 연금대출

미취학자녀 육아, 3차녀 이상 양육,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 등은 사회정책적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취학자녀 3차녀 이상 양육 지원 어떻게 하나요?

A 2023년 기준은 미취학자녀는 2023년 1월 이후 출생한 자녀를 의미하고, 3차녀 이상 양육은 2023년 1월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공무원 임대주택

6세 미만 영유아 자녀 2명 이상 혹은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 임대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선정 시, 미성년 자녀 양육 가점도 부여됩니다.

5. 청사 내 직장 어린이집

이용대상 : 만 0세에서 만 5세 취학 전의 각 지방청사 입주부서에 근무 하는 공무원 및 동반자녀 자녀
이용시간 : 평일 07:30 ~ 19:30, 토요일 07:30 ~ 15:30

청사	아이비집	연락처
경남	진주시	028-252-1676
	마산시	055-262-1676
	창원시	055-262-1676
충청	대전시	042-866-2017
	세종시	044-864-1542
	충주시	043-854-8123
서울	서울시	02-120-1571(44) 868-5049
	인천시	032-837-5501-2
	부산시	051-252-1676
제주	제주시	064-715-7007
	서귀포시	064-715-7007
	제주도청	064-715-7007
충남	대전시	042-866-2017
	충주시	043-854-8123
	충청남도청	041-864-1542
경북	대구시	053-632-7919-2
	경주시	054-262-1676
	경북도청	054-262-1676
충북	대전시	042-866-2017
	충주시	043-854-8123
	충청북도청	043-854-8123
경상	대구시	053-632-7919-2
	경주시	054-262-1676
	경상북도청	054-262-1676
강원	대전시	042-866-2017
	충주시	043-854-8123
	충청북도청	043-854-8123
충남	대전시	042-866-2017
	충주시	043-854-8123
	충청남도청	041-864-1542
경남	진주시	028-252-1676
	마산시	055-262-1676
	창원시	055-262-1676
충청	대전시	042-866-2017
	세종시	044-864-1542
	충주시	043-854-8123
서울	서울시	02-120-1571(44) 868-5049
	인천시	032-837-5501-2
	부산시	051-252-1676
제주	제주시	064-715-7007
	서귀포시	064-715-7007
	제주도청	064-715-7007
충남	대전시	042-866-2017
	충주시	043-854-8123
	충청남도청	041-864-1542
경북	대구시	053-632-7919-2
	경주시	054-262-1676
	경북도청	054-262-1676
충북	대전시	042-866-2017
	충주시	043-854-8123
	충청북도청	043-854-8123
경상	대구시	053-632-7919-2
	경주시	054-262-1676
	경상북도청	054-262-1676
강원	대전시	042-866-2017
	충주시	043-854-8123
	충청북도청	043-854-8123
충남	대전시	042-866-2017
	충주시	043-854-8123
	충청남도청	041-864-1542
경남	진주시	028-252-1676
	마산시	055-262-1676
	창원시	055-262-1676
충청	대전시	042-866-2017
	세종시	044-864-1542
	충주시	043-854-8123
서울	서울시	02-120-1571(44) 868-5049
	인천시	032-837-5501-2
	부산시	051-252-1676
제주	제주시	064-715-7007
	서귀포시	064-715-7007
	제주도청	064-715-7007
충남	대전시	042-866-2017
	충주시	043-854-8123
	충청남도청	041-864-1542
경북	대구시	053-632-7919-2
	경주시	054-262-1676
	경북도청	054-262-1676
충북	대전시	042-866-2017
	충주시	043-854-8123
	충청북도청	043-854-8123
경상	대구시	053-632-7919-2
	경주시	054-262-1676
	경상북도청	054-262-1676
강원	대전시	042-866-2017
	충주시	043-854-8123
	충청북도청	043-854-8123
충남	대전시	042-866-2017
	충주시	043-854-8123
	충청남도청	041-864-1542
경남	진주시	028-252-1676
	마산시	055-262-1676
	창원시	055-262-1676
충청	대전시	042-866-2017
	세종시	044-864-1542
	충주시	043-854-8123
서울	서울시	02-120-1571(44) 868-5049
	인천시	032-837-5501-2
	부산시	051-252-1676
제주	제주시	064-715-7007
	서귀포시	064-715-7007
	제주도청	064-715-7007
충남	대전시	042-866-2017
	충주시	043-854-8123
	충청남도청	041-864-1542
경북	대구시	053-632-7919-2
	경주시	054-262-1676
	경북도청	054-262-1676
강원	대전시	042-866-2017
	충주시	043-854-8123
	충청북도청	043-854-8123
충남	대전시	042-866-2017
	충주시	043-854-8123
	충청남도청	041-864-1542
경남	진주시	028-252-1676
	마산시	055-262-1676
	창원시	055-262-1676
충청	대전시	042-866-2017
	세종시	044-864-1542
	충주시	043-854-8123
서울	서울시	02-120-1571(44) 868-5049
	인천시	032-837-5501-2
	부산시	051-252-1676
제주	제주시	064-715-7007
	서귀포시	064-715-7007
	제주도청	064-715-7007

청사 내 직장 어린이집 통합 사이트

어린이집 입소 및 대기순서 관리 등 종합 정보 제공
이용시간 : 평일 07:30 ~ 19:30, 토요일 07:30 ~ 15:30

정부세종청사 직장 어린이집 사이트

www.childcare.go.kr

함께 하면 행복한 '정부세종청사 어린이집'

부모님과 함께 어린이집을 찾아가세요

정부대전청사 직장 어린이집 사이트

central.childcare.go.kr

함께 하면 행복한 '정부대전청사 어린이집'

부모님과 함께 어린이집을 찾아가세요

* 관련 정보는 인사혁신처(https://www.mpm.go.kr) 홈페이지(새소식-간행물-'행복한 출산양육을 위한 공무원 인사제도 활용 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